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54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1. 2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726,867원 및 위 금원 중 23,227,944원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2024. 4. 4.까지는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3.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23. 7. 5. 접수 제216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판사백주연

별지